

행정자치부

주 의 요 구

제 목 부산배경 드라마 제작 지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부적정

기 관 명 부산광역시

내 용

부산광역시에서는 2015. 11. 9. 사단법인 ○○○○위원회, 주식회사 ○○○○(대표이사 ○○○)과 부산배경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드라마 ○○의 ○○14) 제작·방영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맺고 부산배경 드라마 제작지원 사업 [총사업비 86억원, 시비 30.1억원, 민간(○○○)자본 55.9억원]을 추진하였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은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신규 투자사업은 시·도 자체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매뉴얼」에 따르면 사업비에 지방채, 민간자본이 포함된 경우 자체재원 이외의 재원은 모두 이전재원으로 간주하여 총사업비 기준으로 심사주체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부산배경 드라마 제작 지원사업이 이전재원(민간자본)과 자체재원(시비)을 합한 사업비가 86억원이므로 자체 투자심사 결과에 따

14) 이후 드라마명이 ‘○○○ ○○’로 변경 되었음

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했다.

한편 「지방교부세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재정투자사업에 지출한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의 범위 안에서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부산배경 드라마 제작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체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한 채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30.1억원을 집행하였다.

이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아니한 채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는 등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할 목적으로 도입된 투자심사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

[주의] 앞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